

**환 경 부
보도자료**

2004년 10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04. 10 배포
- ☐ 사진 없음
- ☐ 총 14 쪽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이찬희 과 장
최종원서기관

전화
(메일)

02-2110-6679
sudal@me.go.kr

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정부안 확정,
10월4일 국회에 제출

- ☐ 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월4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공급불안·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환경부에서는 1994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기존의 약 2,600억원('03년)에서 1조원 이상으로 2008년부터는 1조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공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국가등의환경물품조달의추진등에관한법률(일명 녹색구매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유럽, 대만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붙임 : 1. 법률안 주요 골자
- 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및 전망
 - 3.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현황
 - 4. 법률 적용대상 공공기관
 - 5.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기능
 - 6. 외국의 녹색구매 법률·제도 사례

<붙임 1>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 주요골자

가. 친환경상품의 범위 설정(안 제2조)

- 환경마크, 우수재활용 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재활용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제5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며,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안 제6조, 제8조, 제9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안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반영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마. 조례의 제정(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운영(안 제13조)

- 기존의 환경마크협회(민법상 사단법인)를 법정법인인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
 -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사.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등 지원

<붙임 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및 전망

- 1994년부터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상품 등 친환경상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
 - 환경마크상품: '03년 대상제품 구매액 5,261억원 중 1,621억원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구매율31%)
 - 재활용상품: '03년 대상제품 구매액 3,265억원 중 1,006억원을 재활용상품으로 구매
- 친환경상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06년 1조원, '08년에 1조 8천억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 대상제품 구매액의 80%~85% 이상 구매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상품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증대효과 예측 >

법률 시행전(2003년)		법률 시행 후(2005년 하반기부터)	
대상제품 구매액	친환경상품 구매액 (환경마크, 재활용)	대상제품 구매액 ¹⁾	친환경상품 구매액 (환경마크, 재활용)
8,526억원	2,627억원	1조 5천억원('06년) 2조 1천억원('08년)	1조원 ('06년) ²⁾ 1조 8천억원('08년) ³⁾

- 1) '03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구매액 8,500억원에서 매년 대상품목 구매액 증가율 20%를 가정(최근 2-3년간 환경마크 대상품목 증가율을 고려)
- 2)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시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기존 31%에서 80%로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
- 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정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85%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

<붙임 3>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 상품 현황

□ 인증제도 운영 현황

구분	환경마크 상품	GR마크 상품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우수재활용 제품의인증요령 제3조의 규정에 근거
대상품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에 근거 (’04.6월말 현재 95개 대상품목)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대상제품 공고(기술표준원 공고 2004-94호)에 규정한 품목 (’04.6월말 현재 16개 분야 207개 대상품목)
인증제품수	- ’04.6월말 현재 394개 업체, 1,125개 제품 ※ 인쇄·사무용지,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프린터, 사무용 목재가구, 형광램프, 페인트, 벽지 등	- ’04.6월말 현재 146개 업체 186개 제품 ※ 재활용플라스틱 배수로, 재활용점토 벽돌, 재활용 순비누, 폐화석 비료, 전자복사용지, 두루마리 화장지 등
신청료 및 사용료	- 신청료 : 10만원 - 사용료 : 연간매출액에 따라 100 ~ 500만원	- 없음 ※ 인증 신청료, 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인증기관	환경마크협회	산자부 기술표준원

□ 환경마크 인증 현황

(2004. 6월말 현재)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	업체수	제품수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인쇄용지	5	9
		사무용지 및 사무용 종이제품	1	1
		종이접착 테이프 및 종이접착 시트	9	11
		토너카트리지	18	47
	사무용 기기류	복사기	3	18
		프린터	1	5
		팩시밀리	2	4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1	1
		노트북 컴퓨터	0	0
	사무용 가구 등	전기 냉온수기	0	0
		사무용 목재 가구	3	30
		가스 캐비닛 히터	0	0
		사무용 칸막이	0	0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형광램프	5	15
		형광램프용 안정기	1	1
		안정기 내장형 램프	0	0
		감지형 등기구	0	0
		방전램프용 안정기 - 나트륨램프용 및 메탈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	1	9
		전선케이블	1	3
	수도·배관 자재류	절수형 수도꼭지	14	1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12	31
		절수형 양변기	3	13
		양변기용 부속	5	10
		수도 계량기	13	85
		자동 온도조절 밸브	0	0
		수도용 급수관	0	0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	업체수	제품수
주택 · 건설용 자재 · 재료 및 설비 (계속)	기타 자재류	페인트	25	101
		벽지	3	18
		보온 · 단열재 및 흡음재	3	4
		건설용 방수재	1	1
		투수 콘크리트 제품	0	0
		실내용 바닥 장식재	6	31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및 배선용 바닥재	1	1
		벽 및 천장 마감재	3	16
		층간 소음 방지재	0	0
		창호	2	4
	설비류 등	가스 보일러	1	7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비누	10	29
		세탁용 세제	2	2
		주방용 세제	2	3
		식기세척기용 세제	0	0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제	2	7
	섬유 · 가죽류	의류	12	23
		가방	3	3
		신발	4	8
	기타 잡화류	화장지	29	109
		스프레이 제품	0	0
		모조 귀금속	0	0
가정용 기기 · 가구	전기 기기류	에어컨디셔너	0	0
		세탁기	1	3
		식기세척기	1	2
		냉장고	0	0
		김치냉장고	0	0
		전기진공 청소기	0	0
		공기청정기	1	8
	전자 기기류	텔레비전	0	0
		비디오 재생 · 기록기	1	12
		휴대전화기	0	0
	가구류 등	부엌용 목재 식탁	0	0
		불박이형 목재 제품	1	14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	업체수	제품수
교통, 여가, 문화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승용차용 타이어	2	5
		트럭 · 버스용 타이어	2	10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3	4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1	2
		2사이클 엔진오일	1	1
		자동차용 부동액	0	0
		비석면 운송부품	5	15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1	1
	여가 · 문화 관 련 제품류	낚시 추	0	0
		낚시 미끼	1	1
		인쇄물	0	0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 · 자재류	유압 작동유	2	4
		인쇄용 잉크	0	0
		산업용 축전지	2	4
		수산양식용 부자	0	0
		산업용 세척기 및 산업용 세정제	1	1
		포장재	2	4
		수처리제	2	2
	조립제품, 장비 등	냉동 · 냉장 쇼케이스	0	0
		냉 · 온 음료 자동판매기	0	0
		저소음 건설기계	0	0
복합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 용 제품류	유류	1	1
		태양열 온수기	0	0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장치 사용제품	3	4
	플라스틱 · 고무 · 목재 제품류	합성수지 제품	23	41
		고무제품	16	19
		목재 성형제품	1	1
		생분해성 수지 제품	19	39
	금속 · 무기재료 · 요업 제품류	단련용 동합금	2	3
		주물용 동합금	2	8
		무기성 토목 · 건축자재	67	96
		슬래그 가공제품	13	20
	기타	재보충 제품	6	6
		폐기물 감량·감용화 기기	4	12
		전기 · 전자제품용 부품	0	0
계			394	1,125

□ 우수재활용(GR) 인증 현황

(2004. 6월말 현재)

분 야	업체수	인증 상품수
합 계	146	186
폐요업	34	50
폐유리	1	1
폐목재	5	8
폐섬유	4	4
폐금속	2	3
폐플라스틱	41	46
폐식용유	2	5
폐산·폐알칼리	1	1
폐유기용제	2	2
식물성 잔재물	3	3
수산물 가공잔재물	6	6
폐고무	15	19
유기성폐기물	11	11
폐지	19	27

<붙임 4>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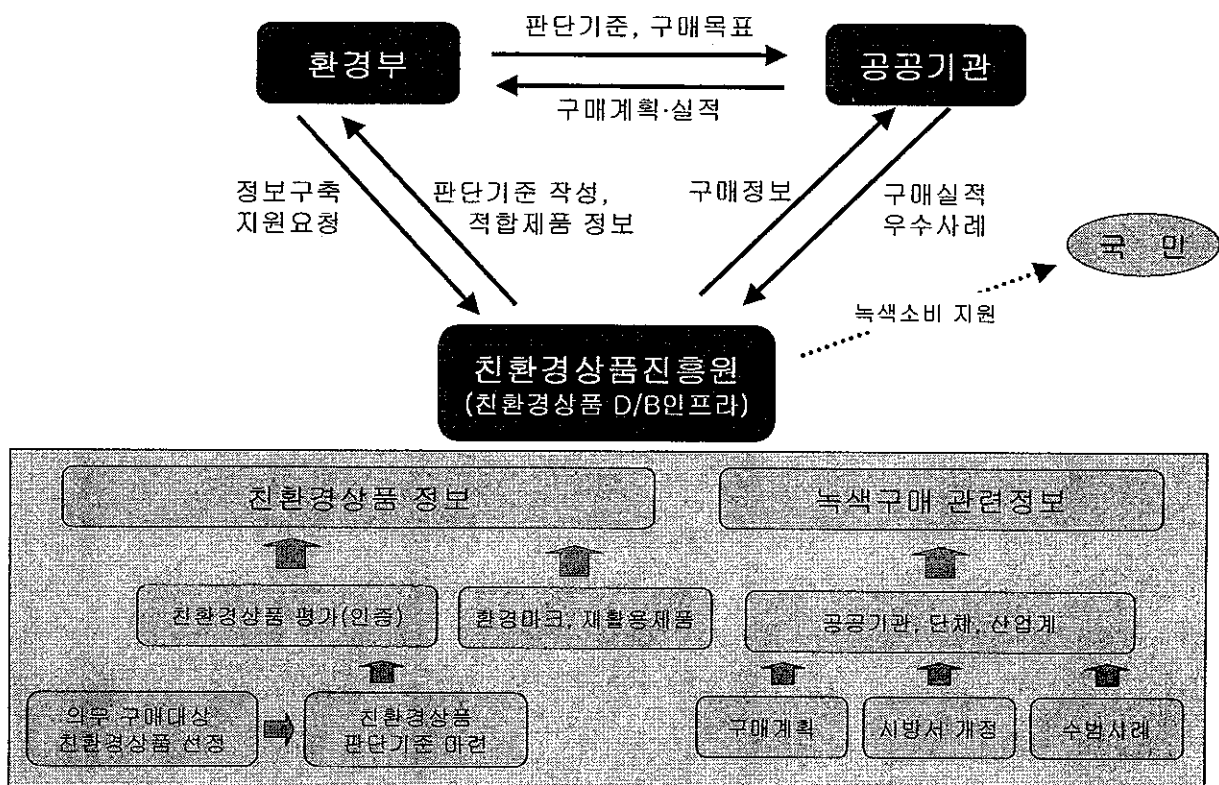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합계	507	
국가기관	48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248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13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KOTRA,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정부산하기관	88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기획예산처 고시 2004-4호))
지방공사 및 공단	110	지방 의료원, 지방 도시개발공사, 지방 시설관리공단, 지방 주차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마포개발공사(서울), 경기관광공사 등

<붙임 5>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주요 기능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각종 정보의 제공
 - 의무구매대상 친환경상품 정보구축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수범사례 발굴 및 보급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 개발
-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 기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각종 업무

<업무추진 체계>



<붙임 6>

외국의 녹색구매 법률·제도 사례

□ 일 본

- “국가등의환경물품조달의추진등에관한법률(‘녹색구매법’)”을 제정
(’00.5월, 환경성)하여 시행 중(’01.6월부터)
 - 법률 시행 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참여율이 대폭 증가

□ OECD

-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을 지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04.4월)

□ 유럽연합(EU)

- 제품의 환경성을 규제하는 지침(Directive)을 제정
 - 일정 수준의 환경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03년 또는 ’06년부터) 제조·판매를 엄격히 제한
- ’90년대 중반부터 기존 사후오염처리에서 사전오염예방 위주의 “통합제품정책”으로 전환 추진
 - ※ 통합제품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 제품의 제조·생산·유통·사용·폐기단계의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차등세제, 공공조달, 에코라벨링, 제품정보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 운영
- EU 차원에서 녹색구매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회원국은 ’06년까지 행동계획을 수립토록 권고(3년마다 수정)

□ 대 만

- “정부구매법”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우선 조달, 가격차등제(10%) 등 규정(’99년)

□ 미 국(뉴욕주)

- 주(州) 재정법에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가격차등제(10%~15%) 등을 규정하여 시행